

2026. 2. 15
제 1730 호



**법원
연보**

법원행정처

법원공보

2026년 2월 15일(일요일)

제1730호

CONTENTS

●	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39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46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149
		군사법원 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151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15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56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158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63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65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181
●	예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183
●	신법령 목록		189
●	인사		195

■ 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37호 2026. 1. 29. 공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7, 별표 4의1 및 별표 5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1 및 별표 5의4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9]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분장사무표

실장	심의관	담당관	분장사무
사법 정보화 실장	사법 정보화 총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사법정보화실 내 부서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내지 수행 3.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 기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정보화정책 수립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다른 실·국의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정보화시스템 반영 내지 개발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4. 사법통계의 제공,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사법 인공 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 인공지능정책 수립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3. 다른 실·국의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인공지능시스템 반영 내지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정보화 예산 및 결산, 계약 등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사법·사법행정 업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단, 사법등기심의관 분장 사무 제외) 4. 사법정보통신망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관리 운영	

실장	심의관	담당관	분장사무
사법 정보화 실장		정보화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정보화 사업 운영 전략 수립, 시스템관리 등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판사무·전자소송·공탁·집행관 등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관련 업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 사업 품질관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데이터센터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각급 법원 데이터센터 관련 전산장비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전산망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사법행정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 보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부 정보화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2.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사법부 가상화시스템 보급,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별표 1의7]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및 인사담당관 분장사무표

명 칭		분 장 사 무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심의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총괄심의관 업무 보좌 2.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3. 법관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 4.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기획 및 정책심의 5. 법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6. 법관 임용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7. 재판연구원 임용 및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8. 해외연수제도 등에 관한 정책심의 및 기획 9. 법관의 해외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연수 관리 10. 법원직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기본적 계획의 수립
	인사담당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관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 2. 법관 임용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업무 보좌 3. 재판연구원 임용 및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업무 보좌 4. 사법행정담당직위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5. 재판연구원 및 사법행정담당직위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 6. 재판연구원 및 사법행정담당직위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7. 재산등록기관 업무 및 병역사항 신고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사총괄심의관이 지정한 업무
인사운영심의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법보좌관후보자 선발 및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2. 4급 이상 법원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3. 법원직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4. 법무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4급 이상 법원직원의 국내연수(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연수에 한함) 집행에 관한 사항 6. 법원직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집행 및 연수관리 7. 법원직원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 8. 법원직원의 채용 및 전직을 위한 업무수행 현황조사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9. 법원직원의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법원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공탁과
	민사국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1과, 형사단독2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형사과, 가사과
인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
수원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춘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법원별	국명	과명
대전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청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대구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부산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울산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창원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광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제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별표 5의4]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회생법원	사무국	총무과, 개인회생1과, 개인회생2과, 파산과
수원회생법원	사무국	총무과, 개인회생과, 파산과
부산회생법원	사무국	총무과, 파산개인회생과
대전회생법원	사무국	총무과, 파산개인회생과
대구회생법원	사무국	총무과, 파산개인회생과
광주회생법원	사무국	총무과, 파산개인회생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38호 2026. 1. 29.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계산식 중 “220만원”을 “250만원”으로, “150만원”을 “16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14만원”을 “16만원”으로 한다.

별표 9 제5호의 지급액란 중 “월 50,000원 이하”를 “월 7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9 제12호의 지급대상란 중 “24퍼센트”를 “27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 ③ (생략)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p>④ 육아휴직 대상 법관이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법원 공무원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법관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p>		<p>④ ----- ----- ----- ----- ----- ----- ----- ----- -----</p>		
<p>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p>	<p>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여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p>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p>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p>	<p>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여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p>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p>	<p>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여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p>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p>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p>	<p>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여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현 행	개 정 안
<p>⑤ ~ ⑧ (생략)</p> <p>제11조의2(정액급식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국외파견되어 제5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정액급식비) ----- ----- 16만원----- ----- ----- -----.</p>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5. 민원업무수당	(생략)	(생략)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2. 중요직무급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24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생략)	(표생략)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5. 민원업무수당	(생략)	(생략)	월 70,000원 이하 〈가산금〉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2. 중요직무급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27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생략)	(표생략)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39호 2026. 1. 29. 공포)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이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군사법원 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40호 2026. 1. 29. 공포)

군사법원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을 운영·관리하는 자와 제8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5. 군사법정보시스템(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6. 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7. 제5조의2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
9.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①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②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③ 제1항의 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제2항의 군형사사법포털은 국방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관리한다.
- ④ 제3항의 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군사법원(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을 운영·관리하는 자와 제8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신설></p>	<p>4.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p>
<p><신설></p>	<p>5. 군사법정보시스템(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p>
<p><신설></p>	<p>6. 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p>
<p><신설></p>	<p>7. 제5조의2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p>
<p><신설></p>	<p>8.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p>
<p><신설></p>	<p>9.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p>
<p><신설></p>	<p>제5조의2(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①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18조(사건번호 등) ①·② (생략)</p> <p>③ 사건별 부호는 별표와 같다. 다만, 모든 재심 사건은 재심대상 재판서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p> <p>④ (생략)</p>	<p>②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u>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u>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p> <p>③ 제1항의 <u>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제2항의 군형사사법포털은 국방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관리한다.</u></p> <p>④ 제3항의 <u>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⑤ 제3항의 <u>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u></p> <p>제18조(사건번호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u> ----- -----.</p> <p>④ (현행과 같음)</p>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공포)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신고사건”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① 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p> <p>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u>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u>을 제외한다.</p> <p>2. ~ 7.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① ----- ----- ----- ----- -----.</p> <p>1. ----- ---. ---, <u>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 상실선고사건</u>-----.</p> <p>2.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42호 2026. 1. 29. 공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률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법원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p> <p>1. ~ 8. (생 략)</p> <p>9.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연장 결정</p> <p>10. ~ 22. (생 략)</p>	<p>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p> <p>10. ~ 22. (현행과 같음)</p>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43호 2026. 1. 29. 공포)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을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로 한다.

제8조 중 “방법,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를 “당직근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당직의 편성)”을“(당직의 편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당직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치하여”를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신설한다.

- ④ 각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 ⑤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다만,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지 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p> <p>① (생 략)</p> <p>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p>	<p>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p>
<p>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방법,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p>	<p>제8조(당직실의 위치) ----- 당직근무----- -----.</p>
<p>제10조(당직의 편성) ①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③ 2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시·군법원과 등기소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한 경우는 등기소장이 시·군법원 판사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p>	<p>제10조(당직의 편성·운영) ① ----- ---1인 이상-----,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 ----- ----- ----- -----.</p>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점검표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이상 없음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책상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상태	○	○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	○	○
문단속 상태	○	○

특이 사항

- ※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난의 ○표시를 한다.
 ※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특이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점검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44호 2026. 1. 29. 공포)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480명”을 “574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480명으로 한다.	제2조(정원) ----- -- 574명-----.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45호 2026. 2. 2.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1차시험의 경우

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 가목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2. 제2차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 가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기관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1. 일반직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8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

2.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종 시험의 직급, 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 2와 같다. 다만, 별표 6의1,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 또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3.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 별표 6의7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

제68조제1항제5호 중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6의7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의”로 한다.

제68조의4제2항 중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8조제1항제5호,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5 및 별표 6의7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7월 31일, 2027년 1월 31일 및 202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8년 1월 30일 이전에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1]

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관련)

급별	직군 직렬및 직류 과목	사법행정사무					
		법원사무	배점 비율 (%)	등기사무	배점 비율 (%)	조사사무	배점 비율 (%)
5급공개 경쟁채용 시험	1차시험 과목	1. 헌 법 2. 언어논리영역 3. 자료해석영역 4. 상황판단영역 5. 영 어 6. 한국사	0 동일 합 0 0	1. 헌 법 2. 언어논리영역 3. 자료해석영역 4. 상황판단영역 5. 영 어 6. 한국사	0 동일 합 0 0	1. 헌법 2. 민법 3. 형법 4. 영어 5. 한국사	동일 합 0 0
	2차시험 과목	1. 행정법 2. 민 법 3. 형 법 4.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10 30 20 20 20	1. 행 정 법 2. 민 법 3. 상 법 (총론, 회사편) 4. 민사소송법 5. 부동산등기법	10 30 20 20 20	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형 법 4. 소년법 5.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20 20 20 10 30
6급 및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차시험 과목	1. 헌법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시험 과목	1. 민법 2. 형법 3.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25 25 25 25			1. 가사소송법 2. 소년법 3. 형법 4.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25 25 25 25
8급 및 9급 공개 경쟁채용 시험	1차시험 과목	1. 한국사 2. 헌법 3. 국어 4. 영어	0 동일 합	1. 한국사 2. 헌법 3. 국어 4. 영어	0 동일 합	1. 한국사 2. 법제대의 3. 국어 4. 영어	0 동일 합
	2차시험 과목	1. 민법 2. 민사소송법 3. 형법 4. 형사소송법	동일 합	1. 민법 2. 민사소송법 3. 상법 (총론, 회사편) 4. 부동산등기법	동일 합	1. 심리학개론, 사회사업학개론 중 1과목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동일 합

급별	직군		사법행정사무						
	직렬및 직류	과목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배점 비율 (%)		배점 비율 (%)		배점 비율 (%)		
2급·3급· 4급·5급 경력경쟁 채용등, 5급공개 경쟁승진및 전직시험	1차시험 과목	1. 행정학 2. 형사법 3. 민사법 4. 민사집행법 5. 부동산등기법	20 20 30 15 15						
	2차시험 과목	1. 민사법 2. 형사법	50 50						
5급경력 경쟁채용등, 5급일반승진, 5급공개 경쟁승진및 전직시험	1차시험 과목						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40 30 30	
	2차시험 과목						1. 가사소송법 2. 소년법 3.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30 30 40	
5급일반 승진시험	1차시험 과목	1. 민사법	민법	20	1. 민사법	민법	15		
			민사 소송법	40		민사 소송법	30		
		2. 형사법	형법	10	2. 형사법	형법	10		
			형사 소송법	20		형사 소송법	20		
	3. 민사집행법		20		3. 민사 집행법		20		
	4. 부동산 등기 공탁	부동산 등기	20	10	4. 등기 실무	부동산 등기	30		20
		공탁		10		상업등기			10
	2차시험 과목	1. 민사법	민법	30	1. 민사 법	민법	25		
민사 소송법			60	30		민사 소송법	50	25	
2. 형사법		형법	40	20	2. 상법 (총론·회사편)		25		
		형사 소송법		20	3. 부동산등기법		25		

급별	직군		사법행정사무					
	직렬및 직류	과목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법원사무	배점 비율 (%)	등기사무	배점 비율 (%)	조사사무	배점 비율 (%)
6급 및 7급 경력경쟁 채용등, 전직시험	1차시험 과목	1. 민사법 2. 형사법 3. 민사집행법 4. 부동산등기법	40 20 20 20	1. 민사법 2. 등기실무 3. 민사집행법	40 45 15	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40 30 30	
	2차시험 과목	1. 민사법 2. 형사법	50 50	1. 민사법 2. 상법(총론·회사편) 3. 부동산등기법	50 25 25	1. 가사소송법 2. 소년법 3.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30 30 40	
7급일반 승진시험	시험과목	1. 민사법	민법	20	1. 민사법	민법	20	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4.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민사 소송법	45		민사 소송법	40	
		1. 형사법	형법	10	2. 민사집행법	10		
			형사 소송법	25		15		
		3. 민사집행법	15		3. 등기 실무	부동산 등기	50	
4. 부동산등기법	15		상업등기	20				
8급 및 9급 경력경쟁 채용등 및 전직시험	1차시험 과목	1. 국어 2. 한국사 3. 영어	40 20 40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시험 과목	법제대의	100			1. 심리학, 사회사업 학 중 1과목 2. 형사정책, 교육학 중 1과목	60 40	

※ 민사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말한다.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2]

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 관련)

급별	과목	직군 직렬	사법행정					
			전산	배점 비율 (%)	통계	배점 비율 (%)	법원경위, 보안관리	배점 비율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행정학 3. 정보체계론 4. 영어 5. 한국사	동 일 합 0 0	1. 법제대의 2. 수학(1)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2차 시험 과목		1. 전자계산기구조론 2. 자료구조론 3. 시스템프로그래밍 4. 시스템분석설계, 데이터 통신, 데이터베이스중 1과목	25 25 25 25	1. 행정학 2. 수리통계학 3. 조사방법론	30 35 35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5. 전산학개론	20 20 20 20 20	1. 법제대의 2. 국어 3. 수학(1) 4. 영어	25 25 25 25		
	2차 시험 과목		1. 자료구조론 2. 전자계산기구조론 3. 운영체계론 4. 데이터통신, 데이터베이스중 1과목	25 25 25 25	1. 통계학개론 2. 조사방법론	50 50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국어 2. 영어 3. 한국사	50 50 0	1. 법제대의 2. 국어 3. 영어 4. 한국사	동 일 합 0	1. 국어	100
	2차 시험 과목		1. 컴퓨터일반 2. 정보보호론	50 50	1. 수학(1) 2. 통계학	50 50	1. 한국사	100

급별	과목	직군 직렬	사법행정					
			전산	배점 비율 (%)	통계	배점 비율 (%)	법원경위, 보안관리	배점 비율 (%)
5급 경력경쟁 채용등, 승진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헌법 2. 행정학		50 50	1. 행정학 2. 수학(I)	50 50		
	2차 시험 과목	1. 시스템분석설계 2. 데이터통신, 데이 타베이스중 1과목		50 50	1. 통계학 2. 조사방법론	50 50		
6급 및 7급 경력경쟁채용 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수학(I)		50 50	1. 법제대의 2. 수학(I)	50 50		
	2차 시험 과목	1. 자료구조론 2. 전산학개론 3. 전자계산기구조론 4. 운영체계론		25 25 25 25	1. 통계학개론 2. 조사방법론	50 50		
7급 일반승진 시험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수학(I) 3. 자료구조론 4. 전산학개론 5. 전자계산기구조론 6. 운영체계론		20 20 15 15 15 15	1. 법제대의 2. 수학(I) 3. 통계학개론 4. 조사방법론	25 25 25 25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 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국어 2. 한국사 3. 영어		30 30 40	1. 국어 2. 한국사	50 50	1. 국어	100
	2차 시험 과목	1. 컴퓨터일반 2. 정보보호론		50 50	1. 통계학 2. 수학(I)	50 50	1. 한국사	100

급별	과목	직군 직렬	사법행정				기술	
			사서	배점 비율 (%)	통역	배점 비율 (%)	토목	배점 비율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50	1. 헌법	동 일 합 0	1. 법제대의개론	50	
		2. 문화사	50	2. 형사법		2. 물리학개론	50	
		3. 영어	0	3. 국어		3. 영어	0	
		4. 한국사	0	4. 한국사		4. 한국사	0	
	2차 시험 과목	1. 도서관조직관리론	35	1. 지정하는 외국어	30	1. 응용역학	30	
		2. 분류와 목록법	35	2. 문화개론	35	2. 토질역학	30	
		3. 도서선택	30	3. 지정하는 외국어 (독해·작문)		3. 수리학	20	
				3. 지정하는 외국어 (회화)	35	4. 측량학	20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5	1. 법제대의	25	1. 물리학개론	25	
		2. 국어	25	2. 국어	25	2. 국어	25	
		3. 한국사	25	3. 한국사	25	3. 한국사	25	
		4. 영어	25	4. 문화개론	25	4. 영어	25	
	2차 시험 과목	1. 도서관조직관리법	50	1. 지정하는 외국어	50	1. 응용역학	50	
		2. 분류와 목록법	50	2. 지정하는 외국어 (독해·작문)	50	2. 측량학	50	
				2. 지정하는 외국어 (회화)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국어	50			1. 물리학개론	동 일 합 0	
		2. 영어	50			2. 국어		
		3. 한국사	0			3. 영어		
	2차 시험 과목	1. 자료조직개론	50			4. 한국사		
		2. 정보학개론	50			1. 측량학	40	
						2. 응용역학	40	
						3. 토목설계	20	
5급 경력경 쟁채용등, 승진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영어	50	1. 국어	50	1. 법제대의	50	
		2. 법제대의	50	2. 법제대의	50	2. 물리학개론	50	
	2차 시험 과목	1. 도서관조직관리법	50	1. 지정하는 외국어	50	1. 측량학	50	
		2. 분류와 목록법	50	2. 지정하는 외국어 (독해·작문)	50	2. 응용역학	50	
				2. 지정하는 외국어 (회화)				
6급 및 7급 경력경쟁채용 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50	1. 국어	50	1. 물리학개론	50	
		2. 영어	50	2. 한국사	50	2. 한국사	50	
	2차 시험 과목	1. 도서관조직관리론	50	1. 지정하는 외국어	50	1. 응용역학	50	
		2. 분류와 목록법	50	2. 지정하는 외국어 (독해·작문)	50	2. 측량학	50	
				2. 지정하는 외국어 (회화)				
7급 일반승진 시험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5			1. 물리학개론	25	
		2. 영어	25			2. 한국사	25	
		3. 도서관조직관리론	25			3. 응용역학	25	
		4. 분류와 목록법	25			4. 측량학	25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 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국어	30			1. 물리학개론	50	
		2. 한국사	30			2. 한국사	50	
		3. 영어	40					
	2차 시험 과목	1. 자료조직개론	50			1. 응용역학	50	
		2. 정보학개론	50			2. 측량학	50	

급별	과목	직군 직렬	기술				
			건축	배점 비율 (%)	기계	배점 비율 (%)	전기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2차 시험 과목	1. 건축계획 2. 건축구조학 3. 건축시공학	30 35 35	1. 기계설계 2. 기계공작법 3. 유체역학, 열역학, 재료역학중 1과목	35 35 30	1. 송배전공학 2. 전기자기학 3. 전기회로이론	30 35 35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 시험 과목	1. 건축시공학 2. 건축구조	50 50	1. 기계공작 2. 기계설계	50 50	1. 전기자기학 2. 전기회로이론	50 50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영어 4. 한국사	동 일 합 0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영어 4. 한국사	동 일 합 0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영어 4. 한국사	동 일 합 0
	2차 시험 과목	1. 건축시공학 2. 건축구조	50 50	1. 기계공작 2. 기계설계	50 50	1. 전기통론 2. 전기기계	50 50
5급 경력경쟁 채용등, 승진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50 50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50 50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50 50
	2차 시험 과목	1. 건축구조 2. 건축시공학	50 50	1. 기계공작 2. 기계설계	50 50	1. 전기자기학 2. 회로이론	50 50
6급 및 7급 경력경쟁채용 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2차 시험 과목	1. 건축시공학 2. 건축구조	50 50	1. 기계공작 2. 기계설계	50 50	1. 전기자기학 2. 전기회로이론	50 50
7급 일반승진 시험	시험 과목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3. 건축시공학 4. 건축구조	25 25 25 25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3. 기계공작 4. 기계설계	25 25 25 25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3. 전기자기학 4. 전기회로이론	25 25 25 25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 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2차 시험 과목	1. 건축시공학 2. 건축구조	50 50	1. 기계공작 2. 기계설계	50 50	1. 전기통론 2. 전력	50 50

급별	과목	직군 직렬	기술				
			화학	배점 비율 (%)	보건	배점 비율 (%)	환경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화학개론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1. 법제대의 2. 보건학개론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1. 법제대의 2. 환경생태학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2차 시험 과목	1. 유기화학 2. 무기화학 3. 분석화학	30 35 35	1. 보건행정학 2. 환경보건학 3. 보건간호학, 보건 영양학중 택일	35 35 30	1. 대기오염관리 2. 수질오염관리 3. 환경위생학	35 35 30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화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 시험 과목	1. 유기화학 2. 무기화학	50 50	1. 보건행정학 2. 환경보건학 3. 보건학개론, 식품 영양학중 택일	25 25 25 25	1. 환경생태학 2. 대기오염관리 3. 수질오염관리 4. 환경위생학	25 25 25 25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화학개론 2. 국어 3. 영어 4. 한국사	동 일 합 0	1. 국어 2. 영어 3. 생물 4. 한국사	동 일 합 0	1. 국어 2. 영어 3. 생물 4. 한국사	동 일 합 0
	2차 시험 과목	1. 유기화학 2. 무기화학	50 50	1. 환경위생 2. 공중보건	50 50	1. 화학 2. 물리	50 50
5급 경력경쟁 채용등, 승진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화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법제대의 2. 보건학개론	50 50	1. 법제대의 2. 환경생태학	50 50
	2차 시험 과목	1. 유기화학 2. 무기화학	50 50	1. 보건행정학 2. 보건간호학, 식품 영양학중 택일	50 50	1. 대기오염 및 수질 오염관리 2. 환경위생학	50 50
6급 및 7급 경력경쟁채용 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화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법제대의 2. 보건학개론	50 50	1. 법제대의 2. 환경생태학	50 50
	2차 시험 과목	1. 유기화학 2. 무기화학	50 50	1. 보건행정학 2. 보건간호학, 식품 영양학중 택일	50 50	1. 대기오염 및 수질 오염관리 2. 환경위생학	50 50
7급 일반승진 시험	시험 과목	1. 화학개론 2. 한국사 3. 유기화학 4. 무기화학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보건학개론 3. 보건행정학 4. 보건간호학, 식품 영양학중 택일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환경생태학 3. 대기오염 및 수질 오염관리 4. 환경위생학	25 25 25 25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 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화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한국사 2. 생물	50 50	1. 한국사 2. 생물	50 50
	2차 시험 과목	1. 유기화학 2. 무기화학	50 50	1. 공중보건 2. 환경위생	50 50	1. 화학 2. 물리	50 50

급별	과목	직군	학예	
		직렬	기록관리연구	배점 비율 (%)
연구관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1. 언어논리영역 2. 자료해석영역 3. 상황판단영역 4. 영어	각 과목 동일함
	2차 시험 과목		1.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2. 전자기록물관리 3. 기록보존학 4. 행정법총론 5. 역사학, 문헌정보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화학, 전산학 중 1과목	20 20 20 20 20
연구사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1. 국어(한문 포함) 2. 영어 3. 한국사	각 과목 동일함
	2차 시험 과목		1.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2. 전자기록물관리 3. 기록보존학 4. 행정법총론	25 25 25 25

※ 민사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말한다.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5]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60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 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 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7]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대체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

(제60조제1항 관련)

대상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헌법
대체하는 시험의 종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심화)

비고: 위 표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는 대상시험의 원서접수 연도에 실시되는 시험으로 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② (생략)</p> <p>③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제11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총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4항에 따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p>	<p>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차시험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 가목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2. 제2차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

현행	개정안
<p>④ ~ ⑧ (생략)</p> <p>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해당 기관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60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각종 시험의 직급, 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 2와 같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과목은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p>	<p>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p> <p>나. 가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기관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8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 2.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60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각종 시험의 직급, 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 2와 같다. 다만, 별표 6의1,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 또는 공식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현 행	개 정 안
<p>② ~ ④ (생 략)</p> <p>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p> <p>1. ~ 4. (생 략)</p> <p>5. 병역, 가점, <u>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u></p> <p>6.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제68조의4(대행근무)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3.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 별표 6의7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6의7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의 -----</u> ----- ---</p> <p>6.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68조의4(대행근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46호 2026. 2. 2. 공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7월 31일, 2027년 1월 31일 및 202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8년 1월 30일 이전에 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평정시기)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점 60점과 경력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2조(평정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예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53호 2026. 2. 3.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가목 본문 외 계산식 중 “220만원”을 “250만원”으로, “150만원”을 “160만원”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14만 원”을 “16만 원”으로 한다.

지급대상				월 지급액
회계	직종	직급	직렬	
일반 회계	일반직공무원	8,9급	사법행정직군의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보안관리직렬(보안관리직류)의 공무원과 기술직군의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의 공무원	70,000원
		5-9급	사법행정직군의 행정사무, 속기, 보안관리직렬(보안직류), 병기직렬의 공무원과 기술직군의 조경, 환경, 관리직렬의 공무원,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70,000원
	8, 9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다군, 8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70,000원
등기특별 회계	일반직공무원	5-9급		70,000원

제14조제2항제5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1호마목2)가) 첫 번째 - 중 “지급하되, 파견규칙에 따른 국제기구 등 파견법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8조 별표 1에 따른 체재비의 100퍼센트 상당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2)가) 두 번째 - 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의 재외근무수당은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국제기구 등 파견법관 및 파견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급액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호마목2)가) 및 제16조제2호라목2)가)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육아휴직수당) ① (생 략)		제6조(육아휴직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3. 삭 제				
4.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4. -----		
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법관(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가. ----- ----- ----- ----- ----- ----- ----- ----- -----.		
<p>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p>	<p>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여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p>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p>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p>	<p>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여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p>	<p>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여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p>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p>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p>	<p>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여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지급대상</th> <th rowspan="2">월 지급액</th> </tr> <tr> <th>회계</th> <th>직종</th> <th>직렬</th> </tr> </thead> <tbody> <tr> <td></td> <td>8. 9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다군, 8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td> <td></td> <td>50,000원</td> </tr> <tr> <td>등기특별회계</td> <td>일반직공무원 (5-9급)</td> <td></td> <td>50,000원</td> </tr> </tbody> </table>				지급대상			월 지급액	회계	직종	직렬		8. 9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다군, 8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50,000원	등기특별회계	일반직공무원 (5-9급)		50,0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지급대상</th> <th rowspan="2">월 지급액</th> </tr> <tr> <th>회계</th> <th>직종</th> <th>직급</th> <th>직렬</th> </tr> </thead> <tbody> <tr> <td></td> <td>8. 9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다군, 8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td> <td></td> <td></td> <td>70,000원</td> </tr> <tr> <td>등기특별회계</td> <td>일반직공무원</td> <td>5-9급</td> <td></td> <td>70,000원</td> </tr> </tbody> </table>					지급대상				월 지급액	회계	직종	직급	직렬		8. 9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다군, 8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70,000원	등기특별회계	일반직공무원	5-9급		70,000원
지급대상			월 지급액																																							
회계	직종	직렬																																								
	8. 9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다군, 8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50,000원																																							
등기특별회계	일반직공무원 (5-9급)		50,000원																																							
지급대상				월 지급액																																						
회계	직종	직급	직렬																																							
	8. 9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다군, 8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70,000원																																						
등기특별회계	일반직공무원	5-9급		70,000원																																						
<p>다. (생략)</p> <p>6. ~ 12. (생략)</p> <p>제16조(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p> <p>1. 법관인 경우</p> <p>가. ~ 라. (생략)</p> <p>마. 파견</p> <p>1) (생략)</p> <p>2) 국외파견</p> <p>가) 직무파견 등의 경우(규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관)</p> <p>-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재판수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파견규칙에 따른 국제기구 등 파견법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8조 별표 1에 따른 체재비의 100퍼센트 상당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한다.</p>				<p>다. (현행과 같음)</p> <p>6. ~ 12. (현행과 같음)</p> <p>제16조(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 ----- ----- ----- -----.</p> <p>1.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 ----- ----- ----- ----- 지급한다.</p>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나·다 (생략) 바·사.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바.·사. (현행과 같음)
<p>2. 법원공무원인 경우(특수수당에 한함)</p> <p>가. ~ 다. (생략)</p> <p>라. 파견</p> <p>1) (생략)</p> <p>2) 국외파견</p> <p>가) 직무파견 등의 경우(규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원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 파견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8조 별표 1에 따른 체재비의 100퍼센트 상당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한다. <p>나) (생략)</p> <p>마·바. (생략)</p>	<p>2. -----</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p> <p>-----</p> <p>- (현행과 같음)</p> <p>- -----</p> <p>-----.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의 재외근무수당은 지급한다.</p> <p>나) (현행과 같음)</p> <p>마.·바. (현행과 같음)</p>

신법령 목록 (2026. 1. 16 ~ 2026. 1. 31)

법 률

법률제21307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1162	2026. 1. 20	4
법률제2130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21307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21163	2026. 1. 21	4
법률제2130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	"	5
법률제21314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21167	2026. 1. 27	4
법률제21315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	5
법률제21316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21317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8

조 약

조약제2620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 카테고리2 센터지정 갱신에 관한 협정	21165	2026. 1. 23	5
----------	--	-------	-------------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043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1160	2026. 1. 16	4
대통령령제36044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	21162	2026. 1. 20	14
대통령령제36045호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	"	16
대통령령제3604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36047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36048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360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3605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36043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중 정정	21163	2026. 1. 21	6
대통령령제36044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7
대통령령제36054호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1167	2026. 1. 27	24
대통령령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7
대통령령제36056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1
대통령령제3605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36058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58
대통령령제36059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62
대통령령제36060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4
대통령령제3606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9

대통령령제3606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1167	2026. 1. 27	100
대통령령제36063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2
대통령령제3606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5
대통령령제3606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6
대통령령제36066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21170	2026. 1. 30	4

총리령

총리령제207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160	2026. 1. 16	8
총리령제2088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65	2026. 1. 23	23
총리령제208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67	2026. 1. 27	107
총리령제2090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70	2026. 1. 30	32

부 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 626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62	2026. 1. 20	33
법무부령제110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
보건복지부령제1137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중 정정	21163	2026. 1. 21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64	2026. 1. 22	4
보건복지부령제1153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2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65	2026. 1. 23	32
법무부령제110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3
해양수산부령제780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취소	"	"	42
국토교통부령제155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66	2026. 1. 26	3
보건복지부령제115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
외교부령제157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	"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0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167	2026. 1. 27	111
국방부령제1203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68	2026. 1. 28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2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169	2026. 1. 29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170	2026. 1. 30	33
국방부령제1201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	"	80
국방부령제12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81

국토교통부령제155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70	2026. 1. 30	82
국토교통부령제155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8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3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	"	"	86
보건복지부령제115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6
보건복지부령제115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8

인사

■ 인사발령 법 제1호 | 2026. 1. 8.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지정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주연	근무시간 단축근무 해제를 명함 (2026. 1. 13. 자)

■ 인사발령 법 제2호 | 2026. 1. 1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대법관			
	대법원 대법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에 보함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직을 면함 (2026. 1. 16. 자)

■ 인사발령 법 제3호 | 2026. 1.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조경란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상목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승철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병렬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천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수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정호	"
(2026. 1. 31. 자)			

■ 인사발령 법 제4호 | 2026. 1. 2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완수	판사에 연임함
	"	남세진	"
	"	류창성	"
	"	서창석	"
	"	윤원목	"
	"	이정엽	"
	"	정혜원	"
	"	진현지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재광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공현진	"
	"	정은영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박소영	"
	"	이영남	"
	"	최미복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재향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
	"	오윤경	"
	"	유효영	"
	"	황영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찬우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정인섭	판사에 연임함
	"	황혜민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대규	"
	"	김진혜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남	"
	"	김수영	"
	"	손원락	"
	"	위지현	"
	"	장민석	"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부장판사	양우창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부장판사	여현주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곽형섭	"
	"	김경진	"
	"	김수정	"
	"	문현호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임영철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지혜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지민	"
	"	이지현	"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부동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장진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정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이성진	"
	"	임창현	"
	"	정일예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서효진	판사에 연임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훈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정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균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경화	"
	"	주은영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오규희	"
	"	이준영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구민경	"
	"	김태은	"
	"	이정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김민정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영희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정영하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현미	"
	"	방선옥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경애	판사에 연임함
"	박정운	"
"	박주영	"
"	임종호	"
"	정현경	"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은혜	"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진영	"
부산고등법원 판사	임상민	"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달기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은주	"
"	박광서	"
특허법원 판사	이혜진	"

(2026. 2. 18. 자)

■ 인사발령 법 제5호 | 2026. 1. 2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판사에 연임함
		(2026. 2. 22. 자)	

■ 인사발령 법 제6호 | 2026. 1. 2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김귀옥	2026. 2. 24.부터 2026. 3.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작	2026. 2. 9.부터 2026. 3. 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윤중	2026. 2. 19.부터 2026. 3. 1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인사발령 법 제7호 | 2026. 1. 2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윤명화	2026. 2. 21.부터 2026. 7. 1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문현정	2026. 2. 19.부터 2027. 2. 18.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정하경	2026. 2. 15.부터 2026. 12. 18.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나. 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2. 1.부터 2027. 2. 12.까지 휴직을 명함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임여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2. 2.부터 2026. 8. 14.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지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2. 4.부터 2026. 9. 25.까지 휴직을 명함
	"	김소망	2026. 2. 13.부터 2026. 12.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이학인	2026. 2. 21.부터 2026. 11. 1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최리지	2026. 2. 21.부터 2026. 3. 2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곽새롬	2026. 2. 18.부터 2026. 2.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사해정	2026. 2. 21.부터 2026. 4. 1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이유진	2026. 2. 21.부터 2026. 8. 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광우	복직을 명함. 1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1. 자)
	"	윤남현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오흥록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두희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13. 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태연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12. 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현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남신향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조희성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14. 자)
	"	허 승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5. 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나원식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정연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19. 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원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14.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범식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수정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13. 자)
	"	정현우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	박기쁨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14. 자)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전교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13. 자)
	수원고등법원 판사	조효정	복직을 명함. 15호봉을 급함.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다. 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권보원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특허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13.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주연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1. 자)
	"	김혜림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13. 자)
	"	노용준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13. 자)
	"	박선민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14. 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류영재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에 포함 (2026. 2. 1. 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권 겹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14. 자)
	"	박지원 (朴智元)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17.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2. 17.부터 2026. 6. 30.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인민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포함 (2026. 2. 14. 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다운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	김동희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	한은주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	홍연경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13. 자)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유미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회생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	정혜승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회생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13. 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가영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포함 (2026. 2. 14.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수민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포함 (2026. 2. 14. 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박혜진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포함 (2026. 2. 8. 자)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2. 8.부터 2027. 2. 7.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나광윤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0. 자)
	"	신은경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장지웅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대구지방법원 판사	정소영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4. 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은혜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11. 자)
	"	차민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7. 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정성희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포함 (2026. 2. 14. 자)
	울산지방법원 판사	조근주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은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	손지연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양희정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가정법원 판사	민양이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광주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2. 2.부터 2027. 2. 28.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지애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1. 자)

■ 인사발령 법 제8호 | 2026. 1. 26.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정기승급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권태관	16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환	1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매경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윤혜정	1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권민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병주	"
	"	최지경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오택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조정익	12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이혜미	11호봉을 급함
나.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박상렬	11호봉을 급함
다.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경민	10호봉을 급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민웅	10호봉을 급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호열	9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박건희	7호봉을 급함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홍준	16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영갑	15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최윤중	"
	수원지방법원 판사	설일영	11호봉을 급함
	부산가정법원 판사	황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인호	10호봉을 급함
	"	황일준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자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청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장태영	"
	부산지방법원 판사	목명균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안철범	9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현숙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주우현	"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정환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이유섭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염정원	7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진아	"
	"	오주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권민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안세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구성훈	"
	대전지방법원 판사	조길상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찬영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문 혁	7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 래	"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아름	"
	울산가정법원 판사	정경수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준영	"
	전주지방법원 판사	신서영	"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안광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정	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아람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정민화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경하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강보라	"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공소정	"
	"	김우재	"
	"	서나현	"
	"	여민승	"
	"	최용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 예	5호봉을 급함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김중권	"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김리나	4호봉을 급함
	"	정윤정	"

(2026. 2. 1. 자)

■ 인사발령 법 제9호 | 2026. 1. 26.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정치언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포함 (2026. 2. 1. ~ 2027. 1. 31.)

■ 인사발령 법 제10호 | 2026. 1. 26.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남근욱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2026. 1. 31. 자)

■ 인사발령 법 제11호 | 2026. 1. 27.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임 명(연 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홍동기	판사에 연임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구회근	"
	"	권순형	"
	"	김우수	"
	"	성수제	"
	"	이승한	"

(2026. 3. 1. 자)

■ 인사발령 법 제12호 | 2026. 1. 27.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임 명(연 입)			
가. 지방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판사에 연임함
	대전가정법원장	문혜정	"
	전주지방법원장	정재규	"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석문	판사에 연임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호	"
	"	박이규	"
	"	황현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행순	"
	"	박미리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근수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봉기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균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태호	판사에 연임함
	"	문주형	"
	"	박순영	"
	"	왕정옥	"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진석	"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2026. 3. 1. 자)			

■ 인사발령 법 제13호 | 2026. 1. 27.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욱	2026. 2. 18.부터 2026. 6. 17.까지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함. 끝.

■ 인사발령 법 제14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진성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부산고등법원장	박중훈	"
		(2026. 2. 9. 자)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중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배광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6. 2. 23. 자)	

■ 인사발령 법 제15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장			
	수원회생법원장	김상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2026. 2. 9. 자)	

■ 인사발령 법 제16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양영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2026. 2. 9. 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혁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장정환	"
	"	황의동	"
	수원고등법원 판사	최종원	"
		(2026. 2. 23. 자)	

■ 인사발령 법 제17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종구	대구고등법원장에 포함
	"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에 포함
나. 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에 포함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수원지방법원장에 포함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9. 자)			

■ 인사발령 법 제18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9. 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종관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23. 자)			
2. 겸임해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겸임을 면함
(2026. 2. 9. 자)			

■ 인사발령 법 제19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 포함 (2026. 2. 9. 자)

■ 인사발령 법 제20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종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균	인천가정법원장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수원회생법원장에 포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장에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민	대전가정법원장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에 포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종화	울산가정법원장에 포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에 포함 (2026. 2. 9. 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보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23. 자) 대전회생법원장에 포함 (2026. 3. 1. 자)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심현욱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9. 자) 대구회생법원장에 포함 (2026. 3. 1.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에 포함 (2026. 3. 1. 자)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김귀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수원가정법원장	이은희	"
	대전가정법원장	문혜정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행정법원장	김국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장	김용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장	김세윤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전주지방법원장	정재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박범석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2. 9. 자)			

■ 인사발령 법 제21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정윤형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을 면함
2. 겸임 및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병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겸임을 면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현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2026. 2. 23. 자)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법원도서관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	채동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	최승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겸임을 면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 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겸임을 면함

(2026. 2. 23. 자)

■ 인사발령 법 제22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특허법원 수석판사	구자현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에 포함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창훈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에 포함
	특허법원 판사	정택수	특허법원 수석판사에 포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2. 겸 임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재욱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2026. 2. 9. 자)			

■ 인사발령 법 제23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보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우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소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명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홍순욱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용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주영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경숙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차영민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유성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상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26. 2. 9. 자)			

■ 인사발령 법 제24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표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종오	"
	"	이현우	"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은영	"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영현	"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달기	"
	"	표현덕	"
	광주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이의영	"
	광주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원철	"
	"	양진수	"
	수원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김민기	"
	"	김종기	"
	"	김종우	"
	"	이수영	"
	"	최봉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세진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우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희수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고권홍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	김은구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권순민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이학승	"
	대전지방법원 판사	고영식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	차호성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이양희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어재원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이재혁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박광서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구년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성남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정문경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	정현경	"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허양운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범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정희	"
	"	정희엽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재남	"
	수원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한소영	특허법원 판사에 포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나.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윤권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포함
	특허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이혜진	"
(2026. 2. 23. 자)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예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2. 23.부터 2027. 2. 20.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송진호	2026. 2. 23.부터 2027.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3. 겸임해임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겸임을 면함
(2026. 2. 23. 자)			

■ 인사발령 법 제25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기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에 포함
(2026. 2. 9. 자)			

■ 인사발령 법 제26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김병주	판사에 임함. 13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김 신	판사에 임함. 13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윤상호	판사에 임함. 1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2. 2. 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주	2026. 2. 3.부터 2026. 2. 20.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신	"
	수원지방법원 판사	윤상호	"

■ 인사발령 법 제27호 | 2026. 1.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파견(연구과정)			
가.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경민	2026. 2. 23.부터 2027. 2. 22.까지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구	2026. 2. 23.부터 2027. 2. 22.까지 일본 교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민욱	2026. 2. 23.부터 2027. 2. 22.까지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기진석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페퍼다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윤동연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은진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샌디에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윤지숙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진영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리치몬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익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중국 홍콩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흥성지원 부장판사	권경원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조아라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혜정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 슬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포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나.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미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구성진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김종신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UC어바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최유경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페퍼다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창희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정연희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예시바(카도조)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수원가정법원 판사	이현정	2026. 2. 23.부터 2026. 12. 22.까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26. 2. 15. 제1730호
Supreme Court of Korea



9 772951 225009

ISSN 2951-2255

04